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1. 24 선고 2019가단60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호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8,424,75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33,644,882원 중 18,424,756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4,9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22.부터 2019. 5. 16.까지 D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어, 2019. 11. 11.

기준 대출금 채무 합계 68,178,526원(=원금 66,052,840+이자 2,125,686원)이 남아있다.

나. D은 원고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2019. 9.경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당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D은 2019. 10. 17.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9. 2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5. 24. 채권최고액 3,84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820만 원이고, D이 소유한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3,200만 원이며,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 합계는 109,262,551원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1.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이 법원 E)에서 7,650만 원에 매각이 이루어져, 그중 2,811,390원이 집행비용에 충당되고, 36,846,991원이 근저당권자인 F조합에 배당되고, 3,204,630원이 피고의 채권자이자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당되었고, 피고에게 나머지 배당금 33,644,882원이 공탁되었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8,82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840만 원을 뺀 4,9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① D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매매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부부인 D과 G(개명 전: H)의 공동소유였는데, 이혼하면서 G이 D에게 자신의 1/2 지분을 이전해주면,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G에게 재산분할금과 장모인 I에 대한 대여금을 합쳐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매잔금 중 6,000만 원을 G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여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840만 원, G의 몫 6,000만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졌음은 인정된다(피고는 위와 같은 G의 채권액 6,000만 원을 D의 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더욱더 명백하다).

다. 다만, 다툼 없는 사실, 을3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원래 G의 것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D과 G의 정당한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나머지 지분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재산분할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과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2009. 11. 5. D과 G이 매매로 1/2씩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G은 아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9. 10. 17. 재산분할 원인으로 그중 자신의 지분을 D에게 이전해준 것이다. G은 그전인 2018. 10. 8.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8드단11649)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D과 G이 이혼하고, G이 D에게 위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해주고,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2019. 6. 20.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G의 모 I(D의 장모)은 2019. 5. 7. D을 상대로 대여금 3,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6. 24. 이를 취하하였다.

3) 2019. 5. 15. 이루어진 D과 J(G의 형부로 보인다)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D에게 이전해주면 D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정산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있다(구체적인 액수나 비율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4)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위 및 시기, 위 대여금 소송의 진행경과, 위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보면, G은 D과 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나중에 정산받기로 하고 이를 D에게 이전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배당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매각대금 76,507,893원(=매각대금 76,500,000원+이자 7,893원)에서 집행비용 2,811,39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배당된 금액 36,846,991원을 제외한 36,849,512원의 1/2에 해당하는 18,424,756원의 범위²⁾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그 배당금지급청구권 33,644,882원 중 위 18,424,756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26360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윤화량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1등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목포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월근콘크리트조 평상대브지붕 15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월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호 84.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라남도 목포시 대 19430㎡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9430분의 34.20

- 이상 -

- 1)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지급금지가처분을 해놓았다.
- 2) 피고의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당된 금액은 제외할 것이 아니다.